연구유리 · 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운영지침

제정 2009. 8. 17. 개정 2013. 9. 1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대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'진흥원'이라 한다)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·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.
- 제4조(용어의 정의)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, 연구의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·변조·표절·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위조"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.
 - 2. "변조"는 연구 재료·장비·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3. "표절"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·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4. "부당한 논문저자 표시"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·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과학적·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5.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 - 6. 타인에게 상기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·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 - 7.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
 - ② "제보자"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

- 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.
- ③ "피조사자"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,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④ "예비조사"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
- ⑤ "본조사"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
- ⑥ "판정"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.

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

- 제5조(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) ① 제보자는 연구과제 관리부서에 구술·서면·전화·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제6조(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)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, 조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.
 -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.
 - 1.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 - 2.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
 - 3.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
 - ③ 예비조사는 연구과제 관리부서에서 담당하되,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- 제7조(예비조사 결과의 보고) ① 예비조사 결과는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.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 -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
- 2.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
- 3.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
- 4. 기타 관련 증거 자료
- 제8조(본조사 착수 및 기간) ① 본조사는 원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,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(이하 "조사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.
 -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9조(조사위원회의 구성)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 -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,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진흥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다.
 -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.
 -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, 제보자가 조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)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·피조사자·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 -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,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·보관 등을 할 수 있다.
- 제11조(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)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·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,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.
 - ②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상의 차별,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.

- ③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연구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제보·조사·심의·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, 조사에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원장과 관계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- 제12조(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)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 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.
- 제13조(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(이하 "최종보고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.
 -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제보 내용
 - 2.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
 - 3.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
 - 4. 관련 증거 및 증인
 - 5.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
 - 6. 조사위원 명단
- 제14조(판정) ① 조사위원회는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.
 -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

제15조(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)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,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1. 법령 또는 해당 지침을 위반한 경우
- 2.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- 3.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- 제16조(결과에 대한 조치) ①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원장에게 징 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 - ② 원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.
 -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제17조(기록의 보관 및 공개)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과제 관리부서에서 보관하며,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, 제보자·조사위원·증인·참고인·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 9. 1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